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및 인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다량배출 사업장 지정 시 업태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 마련(안 제2조제3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시행과,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를 2단계에 걸쳐 인상코자 별표 1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정(안 제9조제4항)

※ 수수료 인상(시행) : 1단계 - 2015.7.1. / 2단계 - 2017.1.1.

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내의 용어 변경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

2)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변경

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을 수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 제7호서식 신설

바. 과태료 부과기준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규정하고,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을 삭제함 (안 제19조제1항)

사. 기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 (안 제8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나. 합 의 : 해당부서와 협의

다. 예산조치 : 2016년부터 개선 독립채산제 시행으로 종량제 봉투 등 판매 수입을 세입처리하고, 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를 세출처리 하여 예산 편성·집행

1) 세출예산

가) 2015년 : 변동없음 (독립 채산제)

나) 2016년 : 2,113백만원 (개선 독립채산제)

다) 2017년 : 3,033백만원 (개선 독립채산제)

2) 세입예산

가) 2015년 : 1,064백만원 (독립 채산제)

나) 2016년 : 3,327백만원 (개선 독립채산제)

다) 2017년 : 4,761백만원 (개선 독립채산제)

3) 예산의 반영 : 추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3. . ~ 2015. 3. .) 결과 :

3) 입법예고 방법 : 성북구보 및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

4)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5) 부패/인권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행규칙 제16조”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36조제3호”를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로 하

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수수료는 규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가격, RFID 기반 계량시스템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가처리·재활용”을 “자가처리·자가재활용·

위탁재활용”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일”을 “1개월”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를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으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신고필증을”을 “발생 억제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8조제1항”으로, “별표 3과 같다”를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제3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제6호서식·제7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2017년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8조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9조제4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9조 관련)

(부피환산시 1ℓ = 0.77kg)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납부필증 포함) 가격

(단위 : 원)

구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2015년	70	140	210	350	700	1,400	4,200	8,400
2017년	100	190	300	500	1,000	2,000	6,000	12,000

※ 규격봉투의 규격, 사양, 재질, 밀도 및 봉투의 표시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 1ℓ, 2ℓ, 3ℓ 규격봉투의 색깔은 연녹색으로 하며, 5ℓ, 10ℓ, 20ℓ 규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

2. RFID 기반 계량시스템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kg	비 고
2015년	100	
2017년	130	

3. 음식점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전용용기(ℓ)	RFID(kg)	비 고
2015년	100	130	
2017년	140	19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 급식인원		명				
	[]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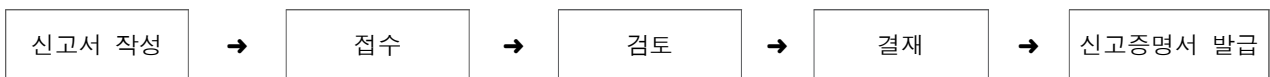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일	kg/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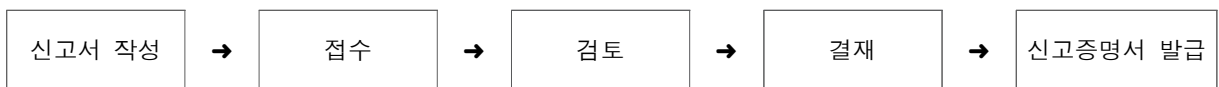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공동 수집·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 수집 · 운 반					
공동 처 리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연월 일	발생 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 량	결 재		
		자가 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 일	재활 용량	재활 용 방법	누계	연월 일	위탁 처리 량	운반 자	재활 용자	재활 용 방법			위탁 재활 용 누계	
					발생 량	처리 량	처리 방법	처리 자	보관 량													

364mm×257 mm[백상지80g/m²(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①공동수집·운반내용				공동처리내용										보관량		결재	
				②위탁처리			③공동자가처리			④부산물처리							
연월일	배출업소명	배출업소소재지	수집·운반량	위탁량	처리업소		처리량누계	연월일	처리방법		처리량누계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장소	처리량		
					업소명	업종			처리방법	처리량							

364mm×257 mm [백상지80g/m²(재활용품)]

(뒤 쪽)

작성 방법

1.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배출업소명과 수집·운반량 등을 적습니다.
3. ②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재활용업소에 위탁한 양과 처리업소명·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공동으로 수집한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③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날짜별로 처리방법,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5. ④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 처리잔재물의 양과 처리방법, 처리장소 등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16년부터 개선 독립채산제 시행으로 종량제 봉투 등 판매수입을
세입예산, 대행업체 수집운반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

2. 비용추계의 전제

○ 음식물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등 연간 판매량('14년 기준)

용량	2ℓ	3ℓ	5ℓ	10ℓ	120ℓ	RFID (kg)	음식점 (kg)
판매량	744,080 매	3,236,788 매	403,445 매	200,860 매	181,167 매	927,000 kg	5,476,000 kg

○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및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 개정전

(단위 : 원)

구분	용량	처리 수수료	수집운반 비	수집운반 비율	판매 이윤	판매이윤 비율	비고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1ℓ	60	28	46.7%	2	3.3%
		2ℓ	120	55	45.8%	3	2.5%
		3ℓ	180	83	46.1%	5	2.8%
		5ℓ	300	235	78.3%	7	2.3%
	납부 필증	10ℓ	600	469	78.2%	13	2.2%
		20ℓ	1,200	939	78.3%	22	1.8%
		60ℓ	3,600	2,340	65.0%	-	-
		120ℓ	7,200	4,680	65.0%	-	-
RFID 계량	kg	75	-	-	-	-	
음식점	kg	80	61	76.3%	-	-	
	ℓ	-	-	-	-	-	
평균				64.4%		2.5%	

-1단계 인상시

(단위 : 원)

구분		용량	처리 수수료	수집운반 비	수집운반 비율	판매 이윤	판매이윤 비율	비고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 납부 필증	1 ℓ	70	33	47.1%	4	5.7%	
		2 ℓ	140	64	45.7%	8	5.7%	
		3 ℓ	210	97	46.2%	13	6.2%	
		5 ℓ	350	274	78.3%	21	6.0%	
		10 ℓ	700	547	78.1%	42	6.0%	
		20 ℓ	1400	1,095	78.2%	70	5.0%	
		60 ℓ	4200	2,730	65.0%	-	-	
	120 ℓ	8400	5,460	65.0%	-	-		
	RFID 계량	kg	100	-	-	-	-	
음식점		kg	130	99	76.2%	-	-	
		ℓ	100	76	76.0%	-	-	
평균					65.6%		5.8%	

※ 판매이윤 평균 5.8%, 수집운반비 비율을 개정전과 동일 적용

- 2단계 인상시

(단위 : 원)

구분		용량	처리 수수료	수집운반 비	수집운반 비율	판매 이윤	판매이윤 비율	비고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 납부 필증	1 ℓ	100	47	47.0%	6	6.0%	
		2 ℓ	190	87	45.8%	11	5.8%	
		3 ℓ	300	138	46.0%	18	6.0%	
		5 ℓ	500	391	78.2%	30	6.0%	
		10 ℓ	1,000	781	78.1%	50	5.0%	
		20 ℓ	2,000	1,565	78.3%	80	4.0%	
		60 ℓ	6,000	3,900	65.0%	-	-	
	120 ℓ	12,000	7,800	65.0%	-	-		
	RFID 계량	kg	130	-	-	-	-	
음식점		kg	190	145	76.3%	-	-	
		ℓ	140	107	76.4%	-	-	
평균					65.6%		5.5%	

※ 판매이윤 평균 5.5%, 수집운반비 비율을 개정전과 동일 적용

- 수집운반비, 판매소이윤은 향후 원가분석, 내·외부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개정전	개정후	예산차액
2015년	세출예산	-	-	-
	세입예산	957	1,064	107
2016년	세출예산	1,680	2,113	433
	세입예산	2,701	3,327	626
2017년	세출예산	1,680	3,033	1,353
	세입예산	2,701	4,761	2,060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배출량 감소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추계대상 : 음식물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등 판매에 따른 연간 세입, 세출
- 추계방법
 - 2015년 (독립채산제)
 - 세입 : '14년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등 연간 판매량 × 반입수수료
 - 2016년, 2017년 (개선 독립채산제)
 - 세입 : '14년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등 연간 판매량 × (처리수수료 - 판매이윤)
 - 세출 : '14년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등 연간 판매량 × 수집운반비

1. 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용량	연간판매량 (‘14년 기준)	세출예산(수집운반비)			예산 증가액		
			개정전	‘16년	‘17년	‘16년	‘17년	
계			1,680	2,113	3,033	433	1,353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 납부 필증	2ℓ	744,080매	41	48	65	7	24
		3ℓ	3,236,788매	268	314	446	46	178
		5ℓ	403,445매	95	110	158	15	63
		10ℓ	200,860매	94	110	157	16	63
		120ℓ	181,167매	848	989	1,413	141	565
	RFID 계량	kg	927,000kg	-	-	-	-	-
음식점	kg	5,476,000kg	334	542	794	208	460	

2. 2015년 세입 추계

구분	용량	연간판매량 (‘14년 기준)	반입수수료(원)		세입예산(백만원)		예산 증가액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계					957	1,064	107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 납부 필증	2ℓ	744,080매	51	68	37	44	7
		3ℓ	3,236,788매	79	100	255	289	34
		5ℓ	403,445매	42	55	17	19	2
		10ℓ	200,860매	96	111	19	20	1
		120ℓ	181,167매	2,520	2,940	456	494	38
	RFID 계량	kg	927,000kg	75	100	69	81	12
음식점	kg	5,476,000kg	19	24	104	117	13	

2. 2016년, 2017년 세입 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용량	연간판매량 (‘14년 기준)	세입예산(수수료-판매이윤)			예산 증가액	
			개정전	‘16년	‘17년	‘16년	‘17년
계			2,701	3,327	4,761	626	2,060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 납부 필증	2ℓ	87	98	133	11	46
		3ℓ	567	637	913	70	346
		5ℓ	118	133	190	15	72
		10ℓ	118	132	191	14	73
		120ℓ	1,304	1522	2,174	218	870
	RFID 계량	kg	69	93	120	24	51
음식점	kg	438	712	1,040	274	602	

3. 작성자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서 신설></p> <p>4. ~ 8. (생 략)</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신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 조의4----- ----- -----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 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 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 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p>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제36조제1항 제3호 -----

3. -----

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중
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
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
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
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
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① 법 제1
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
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
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2조제2호·제5
호·제12호 -----

⑥ -----

----- 발생 억제 및 처
리 계획서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① 법 제1
4조제5항 -----

②·③ (생 략)

④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규격봉투 판매가격, 납부스티커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 가격으로 하고,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전용용기의 사용에 의하여 무게를 계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사용 : kg당 75원

2. 전용용기 사용에 의한 무게

계량 : kg당 80원

⑤ ~ ⑦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수료는 규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가격, RFID 기반 계량시스템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 -----

----- 폐기물
처리 신고자-----

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
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
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
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
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
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3. (생략)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
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폐기물처
리 신고자 -----

-----.

2.·3.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
항) -----
-----.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

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

4. -----
자가처리·자가재활용·위탁재활용 ----- 별지 제5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5. -----

----- 1개월 -----

-----(법 제15조의2제3항)-----
----- 발생 억제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제6항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처리 신고자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6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10)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1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